발송번호: 9-5-2020-021344754

발송일자: 2020.03.24.

#### YOUR INVENTION PARTNER

# 특 허 청 특허결정서

출	원	인	성	명	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명 (특허고객번호:	
					220040166499)	
			주	소		
대	리	인	성	명	유성원 외 2명	
			주	소		
발	명	자	성	명	정연호	
			주	소		
발	명	자	성	명	배진영	
			주	소		
발	명	자	성	명	백정훈	
			주	소		
발	명	자	성	명	윤영철	
			주	소		
출	원 번		호	10-2018-0063096		
발	명	의	명	칭	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광학 카메라 통신 장치 및 방법	
청	구	;	항	수	5	

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. (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 다.) 끝.

### [ 참고문헌 ]

- 1. JP2001208511 A
- 2. JP2013255253 A
- 3. KR1020170043146 A

#### 2020.03.24.

##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

방송미디어심사팀

심사관 배경환

#### << 안내 >>

【 등록료 납부,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,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】

- 1. 등록료 납부안내
  -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(1~3년차분) : 240,000 원(1-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), 120,000 원(50% 감면대상자인 경우), 72,000 원(70% 감면대상자인 경우)
  -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,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-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(특허료 납부 안내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(다만,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)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.
- 3. 2018. 7. 1. 설정 등록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. 특허로(http://www.patent.go.kr)에서 「전자등록증 신청」을 사전에 하거나, 납부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)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「전자등록증 수신함」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.
- 4. 내국인은 매년 2월,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/jsp/kiponet/mp/patentprize/index.ht m)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(고안)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- o 신청기준일(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,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)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(고 안)
  - o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「약사법」 또는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 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
- 5.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(다만, '12.3.15. 이후의 출원이고,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 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)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 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(특허마당→인터넷공보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※「특허로」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,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(SMS)으로.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- ※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(www.ipacademy.net)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☎042-481-5768(담당심사관 배경환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・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.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, 특허청 홈페이지(https://www.kipo.go.kr) 공직비리신고센터(특허청-민원/참여-국민신고-공직비리신고센터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
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,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!